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08. 14.

박성준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 08. 1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4. 09. 25.)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 11. 25.)

상정, 축조심사

-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 12. 02.)

상정, 축조심사

- 제3차 범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 12. 03.)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9차 정무위원회 (2024. 12. 0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박성준의원)

현행법은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업자 등록을 위한 문턱이 지나치게 낮음에 따라 불법대부업체들이 등록대부업체 명의를 돈을 주고 거래한 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한 경우에도 계약에 따른 원금과 법정 최고이자를 보장하고 있어 불법적인 영업에 따른 이익을 근절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한편 최근 대부업체와 이용자를 연결하여 주면서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여주는 대부중개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중개플랫폼 운영자는 대부중개업자로서 시·도지사에 등록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여력 부족으로 해당 플랫폼에 대한 촘촘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만,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광고의 경우 대부중개로 보기 어려워 해당 조항의 적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면서 불법대부업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대부중개플랫폼을 활용하는 대부중개업자는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불법대부업자의 대부중개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건전한 대부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의2, 제3조의5제1항·제2항,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3조제2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없음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2024. 09. 25.자로 직접 회부

4.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위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5. 찬반토론 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